##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영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58

발의연월일: 2024. 7. 25.

발 의 자:김영호·문대림·문정복

신정훈 • 민병덕 • 김영배

한민수 · 김동아 · 이재정

김준혁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다른 수사기관이 고 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 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고, 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의 이첩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계속 수사할 수 도 있음.

그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인지하거나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이첩받은 검사·법관·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 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 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기관의 검사가 수사과정에서 압수·수색 영장 청구, 체포·구속 영장 청구, 공소의 제기·유지 등의 직무를 소 극적으로 수행하는 '제식구감싸기' 행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 이 있음.

이에 검사・법관・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외의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경우에도 수사처검 사가 압수・수색 영장 청구, 체포・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・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위공직자범죄등의 대상이 되는 수사에 공정을 기하려는 것임(안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신설).

#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4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검찰청법」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다른 수사 기관에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에도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이첩한 사건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.

- 1.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2·제200조의3·제200조의4 또는 제201 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·구속영장의 청구
- 2. 「형사소송법」 제215조에 따른 압수영장·수색영장 또는 검증영 장의 청구
- 3.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소의 제기 및 유지
- ⑤ 「검찰청법」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도록 회신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처검사로 하여금

해당 사건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.

- 1.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2·제200조의3·제200조의4 또는 제201 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·구속영장의 청구
- 2. 「형사소송법」 제215조에 따른 압수영장·수색영장 또는 검증영 장의 청구
- 3.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소의 제기 및 유지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) 제24조제3항 단서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된 고위 공직자범죄등의 사건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하도록 회신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의 사건부터 적용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4조(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)	제24조(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처장은 피의자, 피해자, 사	③
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비추어	
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	
죄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	
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	
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.	
<단서 신설>	다만, 「검찰청법」 제4조 및
	제5조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다
	른 수사기관에 제3조제1항제2
	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이첩하
	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
	하는 바에 따라 수사처검사로
	하여금 이첩한 사건의 다음 각
	호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
	<u>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2</u>
	<u>· 제200</u> 조의3 · 제200조의4 또
	는 제201조의2에 따른 체포영
	<u>장·구속영장의 청구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「형사소송법」 제215조에
	<u>따른 압수영장·수색영장 또</u>

<신 설>

④ (생 략) <신 설> 는 검증영장의 청구

- 3.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소의 제기 및 유지
-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「검찰청법」 제4조 및 제5 조에도 불구하고 처장은 제4항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하도록 회신하여 다른 수사기관에서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수사처검사로 하여금 해당 사건의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하도록 할 수 있다.
- 1. 「형사소송법」 제200조의2 •제200조의3·제200조의4 또 는 제201조의2에 따른 체포영 장·구속영장의 청구
- 2. 「형사소송법」 제215조에따른 압수영장・수색영장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
- 3.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소의 제기 및 유지